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4.

발 의 자 : 김은혜 · 김미애 · 안상훈
윤재옥 · 김정재 · 최수진
김기현 · 곽규택 · 김재섭
서일준 · 조승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, 건축물 축조,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·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·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·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·사용 근거를 마련하고,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·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

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
2 신설 등).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의 출입과 사용 등) ① 철도 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·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,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,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·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·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·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, 그 밖에 부득이한

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.

④ 일출 전·일몰 후에는 그 토지나 건축물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 또는 타인의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명령으로”를 “명령, 제45조의2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”로 한다.

제82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4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·일시사용 또는 축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5조의2(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의 출입과 사용 등)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·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,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,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·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</u>

경·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·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.

④ 일출 전·일몰 후에는 그 토지나 건축물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 또는 타인의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

제46조(손실보상) ① 국토교통부 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·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82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(손실보상) ① -----

-----명령, 제45조의2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2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4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·일시사용 또는 죽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

2. ~ 4. (생략) ⑤ · ⑥ (생략)	<u>람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